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상정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도 욱)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편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현 행: 주민세(소득할, 균등할)·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
 - 개편 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
-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 제출토

록 신설함(안 제4조의2).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제2호·제3호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의 세율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세 조례」 제26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1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제1항·제3항·제5항 중 “법인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소득세할”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4(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법인세분·소득세분”으로 하고,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4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1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출년월일 : 2010. 2.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9조부터제24조까지).
 - 현 행: 주민세(소득할, 균등할)·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
 - 개편 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4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

101조부터 제106조까지).

다.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지방세수 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각각“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제2호·제3호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의 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세 조례」 제26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1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2조제1항·제3항·제5항 중 “법인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소득세할”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4(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법인세분·소득세분”으로 하고,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소득세할”을 각각 “소득세분”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4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② <u>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세</u> 2. <u>재산세</u> 3. <u>자동차세</u> 4. <u>주행세</u> 5. <u>농업소득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p>③ <u>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사업소세</u>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세</u> 2. <u>지방소득세</u> 3. <u>재산세</u> 4. <u>자동차세</u> 5. <u>주행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p>제4조의2(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u>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 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0조2(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u>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19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 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u> <u>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u> <u>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u>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 <u>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할</u>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소지 또는 <u>사업장 소재지</u>마다 각각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시내에 <u>사업장을</u> 둔 개인 : <u>사업장 소재지</u> 법인 : <u>사업장 소재지</u> 	<p>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분</u>-----</p> <p>-----</p> <p>-----</p> <p>-----</p> <p><u>사업소</u>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 <u>사업소를</u>----- : 법인: <u>사업소</u> -----
<p>제21조(세율) ① <u>균등할의 세율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개인의 세율</u> 가. 시내에 <u>주소를</u> 둔 개인의 세율: 4,000원 나. 시내에 <u>사업장을</u> 둔 개인: <u>50,000원</u> <u>법인의 세율</u> 	<p>제21조(세율) ① <u>법 제17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개인</u> 가. 시내에 <u>주소를</u> 둔 개인의 세율: 4,000원 나. 시내에 <u>사업소를</u> 둔 개인: <u>50,000원</u> <u>법인의 세율</u>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그 밖의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p>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그 밖의 법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body> </table> <p>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현 행	개 정 안
<p>분의 10 <u>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u> <u>100분의 10</u></p> <p><신 설></p>	<p>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제21조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세 조례」 제26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2조(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u>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u>법인세</u>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절의2 지방소득세</u></p> <p>제22조(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u>분</p> <p style="text-align: right;">-법인세분-</p>

현행	개정안
<p>신고하는 때에는 그 <u>소득세할</u>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u>소득세할</u>은 법 제177조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 방법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p> <p>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의하여 <u>소득세할</u>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부터 제72조 및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u>소득세할</u>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u>소득세할</u>을 환부하여야 한다.</p>	<p>-----<u>소득세분</u>-----</p> <p>-----</p> <p>-----</p> <p>-----</p> <p>② -----</p> <p>-----</p> <p>-----</p> <p>-----<u>소득세분</u>-----</p> <p>-----</p> <p>-----</p> <p>③ -----<u>소득세분</u>-----</p> <p>-----</p> <p>-----</p> <p>-----</p> <p>-----</p> <p>-----</p> <p>-----</p> <p>-----</p> <p>④ -----</p> <p>-----</p> <p>-----<u>소득세분</u>-----</p> <p>-----</p> <p>-----</p> <p>-----</p> <p>-----<u>소득세분</u>-----</p> <p>-----</p>

현행	개정안
<p>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소득세할의 신고</u>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고지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 농업소득세</u></p> <p>제45조(납세의무자) ① <u>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농업·농촌기본법</u>」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u>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u>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⑤ ----- -----<u>소득세분</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7조(개간·개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8조 <삭제 2001.2.10></p>	<p><삭 제></p>
<p>제49조(감면사항 결정통지) 시장은 제46조 및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50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 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삭 제></p>
<p>제51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15일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52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 <세 율></p> <p>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p> <p>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p> <p>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p> <p>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p> <p>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53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54조 <삭제 2001.2.10></p>	<p><삭 제></p>
<p>제55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해당 시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5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실비변상)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목적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사업소세</p>	<p><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제101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 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 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 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 업주</p>	
<p>제102조(과세표준) <u>사업소세의 과 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 적</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의 총액</p>	<p><삭 제></p>
<p>제103조(세율) ① <u>사업소세의 세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 원</p> <p>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p> <p>② 영 제211조의2 에 의한 오염 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 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 으로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0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05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0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p><삭제></p>

현행	개정안
<p>4. <u>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p> <p>6. <u>그 밖의 필요한 사항</u></p>	